

##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전략파트/신분준/4800195e

종 목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 준 액(원)
이륜차 (자전거 포함)	1천만원 미만	미적용	300,000
	1천만원 ~ 2천만원	미적용	350,000
	2천만원 ~ 3천만원	미적용	400,000
	3천만원 이상	미적용	500,000
3중	1천만원 미만	기본료	660,000
	1천만원 ~ 2천만원	5.06	1,012,000
	2천만원 ~ 3천만원	4.18	1,254,000
	3천만원 ~ 5천만원	3.74	1,870,000
	5천만원 ~ 1억원	2.88	2,882,000
	1억원 ~ 2억원	2.20	4,400,000
	2억원 ~ 3억원	1.95	5,841,000
	3억원 ~ 5억원	1.61	8,030,000
	5억원 ~ 10억원	1.27	12,650,000
	10억원 ~ 20억원	1.11	22,220,000
	20억원 ~ 30억원	1.02	30,690,000
	30억원 ~ 50억원	0.91	45,650,000
	50억원 ~ 100억원	0.4 가산	
	100억원 초과금액	0.2 가산	
	배상책임 약관담보	1.5배	해당사건 결정 손해액 보수기준
사고조사 면책결정 사건	3배		
법정 분쟁사건	일반소송건의 손해사정	기본보수 30% 할증	
	의뢰사의 경영 환경에 영향이 있는 사건 손해사정	당사자 협정 수수료	

- 주) 1. 이륜차의 경우 손해사정금액은 간접손해, 장구류를 제외한 과실상계 전 금액으로 함  
 2.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기본표)보다 적을 때에는 차하위 기준액 적용함  
 3. 외부손사 면책 결정 기여 시 아래 각 항에 따른다.  
 - 보상담당자는 외부손사의 면책 기여도를 외부손사와 협의 결정 후 면책 수수료 산정 시 반영한다.  
 - 위장사고 면책 수수료는 보험조사파트 지급기준액 또는 세부심사기준액 이하로 한다.  
 - 여비, 교통비 별도 산정  
 4. VAT 제외 금액임

선임 손해사정사 여비, 교통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항공임	실비
철도임	KTX(특실 제외)
선임	1등 정액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 기타교통수단	실비
업무용 승용차	유류대 및 통행료
일비(식비포함)	30,000원
숙박비(1일당)	50,000원

- 주) 1. 대한민국내 선임손해사정인 법인의 본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시단위 기준) 여비교통비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단, 보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타지역소재 조사자가 시외 출장한 경우에는 상기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 같은 지역 중복 출장 시 교통비 1회 지급 제한
2. 일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일비, 숙박비는 1일당 금액임).
3.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실비를 정할 수 있다.
4. VAT 포함 금액임

메리츠화재 2017. 12. 28

<별첨1> 손해사정 기본 보수표

구분	손해사정액	요율	기준액(원)	비고
기본보수표	1천만원 미만	기본료	660,000원	1)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차하위 기준액 적용함. 2)손해액이 소액( 백만원) 및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천만원 미만	5.06	1,012,000원	
	3천만원 미만	4.18	1,254,000원	
	5천만원 미만	3.74	1,870,000원	
	1억원 미만	2.88	2,882,000원	
	1억원 이상	2.20	4,400,000원	
외산이륜차 /자전거	최저수임료		80,000원	위장사고 적발 및 손해절감액이 있는 경우 별도로 조정하여 협의 할 수 있다.
	200만원 미만		120,000원	
	300만원 미만		180,000원	
	500만원 미만		250,000원	
	1천만원 미만		350,000원	
	2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450,000원	
	3천만원 이상			
여비/교통비 기준	대중교통		실비	KTX, 항공(제주), 버스 등
	승용차		유류대, 통행료	
	숙박비		40,000원	1일당
	일비		30,000원	식대(예비비 포함)

주1) 손해액 절감, 위장사고 적발 및 기타 특수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수료를 증액 및 감액을 할 수 있다.

KB손해 2019. 10. 13

KB손해 4ms

④

[붙임1]

## 보수정산 기준표

가. 3종대를 중 자동차가 아닌 특수피해를 보수기준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원)
1천만원 미만	기본료	660,000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5.06	1,012,000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4.18	1,254,00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74	1,870,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88	2,882,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20	4,40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95	5,841,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61	8,03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27	12,6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11	22,22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02	30,690,000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91	45,650,0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4가산	
100억원 초과금액	0.2가산	

- 주) 1. 이 보수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또는 기본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기준액(또는 기본료)을 적용한다.  
 2. 보험사기를 입증하여 면책 처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손해사정금액을 별도로 정한 후 보수를 인정한다.

나. 손해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험금 사정업무만을 위탁한 경우 보수기준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원)	적용기준
500만원까지	기본료	250,000	손해사정 금액은

2

5백만원초과 1천만원까지	4.5%	450,000	과실상계 이전 금액기준 으로 적용 (간접손해 비용 제외)
1천만원초과 2천만원까지	3.6%	720,000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3.0%	1,500,000	
5천만원초과	2.5%	최고 1,800,000	

- 주) 1. 특수피해물을 제외한 세차기, 수입이륜차, 자전거, 제트스키등 당사자간 협의 후 보험금 사정 업무만 의뢰하는 피해물에 적용한다.(단, 세차기 보수기준은 나-표1을 적용한다.)
2. 이 보수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또는 기본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기준액을 적용한다.
3. 보험사기를 입증하여 면책처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손해사정금액을 별도로 정한 후 보수를 인정한다.

[나-표1]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원)	적용기준
500만원까지	기본료	300,000	손해사정 금액은 과실상계 이전 금액기준 으로 적용 (간접손해 비용 제외)
5백만원초과 1천만원까지	5.0%	500,000	
1천만원초과 2천만원까지	4.0%	800,000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3.0%	1,500,000	
5천만원초과	2.5%	최고 1,800,000	

다. 선임 손해사정사 여비교통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항공, 철도, 선박, 기타대중교통	일반석기준 실비	
업무용 승용차	유류대 및 통행료 실비	
일비(식비포함)	30,000원	
숙박비(1일당)	40,000원	

- 주) 1. 대한민국 내 선임손해사정사 법인의 본 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시단위기준)의 여비교통비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단, 보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타 지역소재 조사자가 시외 출장한 경우에는 상기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감정인 감정료 인정기준의 경우 건축물 안전진단시 일비는 제외한다.)
2. 일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일비, 숙박비는 1일당 금액임)
3.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실비를 정할 수 있다.

①

[별표 1. 손해사정 기본보수표(가)]

# 손해사정 기본보수표



가. 외제자동차 및 기타대물 손해사정 기본보수표(이륜차 제외)

구분	현행 (정액보수)	기본보수 (A)	변경				지급보수 (C = A+B)	지급보수한도
			삭감보수(B)		일반 : 30%이상 딜러 : 15%이상	지급보수		
			일반 : 15%미만 딜러 : 8%미만	일반 : 30%미만 딜러 : 15%미만				
500만원 미만	35만원	25만원	40,000원	80,000원	삭감액의 10%	원	60만원	
500만원 ~ 1천만원 미만	50만원	30만원	80,000원	160,000원	10%	원	70만원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	80만원	60만원	80,000원	160,000원	삭감액의 5%	원	100만원	
2천만원 ~ 3천만원 미만	120만원	90만원 ✓	120,000원	240,000원 ✓	5%	원	150만원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180만원	130만원	200,000원	400,000원	5%	원	250만원	
5천만원 ~ 8천만원 미만	230만원	160만원	250,000원	510,000원	4%	원	300만원	
8천만원 ~ 1억원 미만	300만원	220만원	320,000원	640,000원	4%	원	400만원	
1억원 ~ 2억원 미만	400만원	300만원	400,000원	800,000원	4%	원	500만원	

(※ 삭감율이 일반정비공장 10%미만, 딜리공장 5%미만인 경우 기본보수만 지급)

나. 렌트카 손해사정 보수 : 청구액에 대한 삭감액의 30%이상 초과분(금호렌트카 70%기준)을 삭감보수에 포함 후 산정  
다. 미수선 수리비 : 기본보수의 80% 적용

라. 기타대물 : 위 “가”항의 보수표 적용하되 외제자동차를 포함하여 동 손해사정금액을 초과하는 건은 별도 협의한다.  
마. 위장사고 적발 면책시 : 건적금액의 10% 지급(출장(경)비 없음)

※ 손해사정금액 : 손해사정인 작성 날인한 손해사정 보고서상의 사정금액을 말하며, 이는 과실 공제 전 피해물의 사정 금액을 뜻하되 간접손해 중 단순한 휴차료 또는 대차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 개인택시 공제 프로그램  
 개인택시 4 공제 프로그램  
 2

[별표 1. 손해사정 기본보수표(나)]

**손해사정 기본보수표**

가. 이륜자동차 손해사정 기본보수표

구분 손해사정금액	현행 보수	변경 보수
200만원 미만	7.0 %	120,000
200만원 ~ 500만원 미만		7.0 %
500만원 ~ 1천만원 미만		6.5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	6.5 %	6.0 %
2천만원 ~ 1억원 미만	6.0 %	5.0 %
위장사고 적발 면책시	없 음	견적금액의 10 %(출장(경)비 없음)

나. 위 손해사정금액을 초과하는 건은 별도 협의한다.

다. 출장비는 [별표 2. 교통(경)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손해사정금액

: 손해사정인 작성 날인한 손해사정 보고서상의 사정금액을 말하며, 이는 과실 공제 전 피해물의 사정금액을 뜻하되 간접손해 중 단순한 휴차료 또는 대차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경비 경비 지급

③ ☆

[별표 2. 교통(경)비 지급기준]

**교통(경)비 지급기준**

교 통 비				
산 출 근 거	KTX	충청권	48,000	대전역 일반실 왕복요금
		영남권	90,000	부산역 일반실 왕복요금
		호남권	83,000	목포역 일반실 왕복요금
	항공기	제주	174,000	아시아나항공 일반석 왕복(평일)
	2차교통비	출장도시	30,000	출장지역->목적지 왕복 교통비
	숙 박 비			
1박		30,000	출장지 숙박 시 청구	
기 타 비 용				
식대	1식	5,000	1회 출장시 2식 기준 청구	

청구 기준	출장지	도 심 교통비	KTX 항공권	숙박비	식 대	합 계 (당일)	합 계 (1박)
	충청권	30,000	48,000	30,000	10,000	88,000	118,000
	영남권	30,000	90,000	30,000	10,000	130,000	160,000
	호남권	30,000	83,000	30,000	10,000	123,000	153,000
	제 주	30,000	174,000	30,000	10,000	214,000	224,000

※ 서울은 별도 교통비 없으며, 인천 및 경기지역은 2차 교통비 30,000원, 강원지역은 충청권에 준하여 산정함

[별첨 1. 협조의무 비용]

1. 협조의무 비용

계약서 제 12조(협조의무)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수도권을 1회 5만원을 그 이외의 지역은 10만원을 지급하되 1건당 2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손해사정 수수료 Table

2014.12.01

1. 3종 피해물 중 자동차가 아닌 피해물

[단위:원]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	비 고
1백만원 이하		300,000원	
5백만원 이하		400,000원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500,000원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5.06	1,012,000원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4.18	1,254,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3.74	1,870,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88	2,882,000원	
1억원 초과	2.2	사전협의	

- 주) 1. 위장사고 면책으로 결정된 건은 금액 및 난이도 감안 별도 협의
- 2.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기준액 적용
- 3. 손해사정액 : 과실상계전 금액

2. 지방권은 교통비 및 통행료 별도 (교통비 : 1km:200원)

3. 출발지는 손사사무소 기준

4. 대중교통 및 출장지 2차 교통비 : 실비

5. 일비 : 3만원


숙박비 : 4만원

## 손해사정 수수료 Table

2014.12.01

### 1.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수수료

[단위:원]

손해사정금액	수수료	비 고
1백만원 이하	기본료 250,000원 (지방300,000원)	※ 손해사정액이란? 1. 직접손해액 기준 (간접손해 제외) 2. 과실상계전 금액
5백만원 이하		
5백만원 ~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사전협의	
5천만원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주) 1. 위장사고 면책으로 결정된 건은 금액 및 난이도 감안 별도 협의  
 2.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기준액 적용

2. 지방권은 교통비 및 통행료 별도 (교통비 : 1km:200원)

3. 출발지는 손사사무소 기준

4. 대중교통 및 출장지 2차 교통비 : 실비

5. 일비 : 3만원  
 숙박비 : 4만원

별첨#1

손해사정 위탁 수수료

1. 특수 차량 수수료(이륜차, 자전거등 포함)

단위: %, 원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	비고
500만원 이하	5.0%	250,000	1. 지방권 및 권역외는 교통비 및 통행료 별도 2. 일비, 숙박비 별도 3. 수수료는 요율을 기본으로 하고 직전 손해사정금액 기준액에 못미치는 경우는 그 기준액을 수수료로 함 4. 3,000만원 현저히 초과건은 수임시 수수료 별도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함
1,000만원 이하	4.0%	400,000	
1,500만원 이하	3.5%	525,000	
2,000만원 이하	3.0%	600,000	
3000만원 이하	2.5%	750,000	
3000만원 초과	2%	800,000	

※간접손해, 장구류를 제외한 과실상계 전 금액 기준임.

2. 이의 일반 특수 피해물

단위: %, 원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	비고
1천만원 이하	기본료	660,000	1. 지방권 및 권역외는 교통비 및 통행료 별도 2. 일비, 숙박비 별도 3. 500만원 이하는 35만원을 한도로 사전 협의 (기본요율 6%, 난이도 상 7%, 하 5%) 4. 수수료는 요율을 기본으로 하고 직전 손해사정금액 기준액에 못미치는 경우는 그 기준액을 수수료로 함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5.06	1,012,000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4.18	1,254,000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3.74	1,870,00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88	2,882,000	
1억원 이상	2.2	사전협의	

3. 수수료 외 비용

- 1) 교통비 - 1km 당 200원, 통행료(실비, 영수증첨부), 출발지는 손사 사무실 기준 포털사이트 길찾기 거리 기준 (수도권 및 손사사무실 기준 동일 권역 시,군은 청구 제외)
- 2) 일비 - 2만원, 숙박비 - 4만원

## 손해사정 위탁 수수료(보수지침)

### 가. 외산 이륜차 및 외산 자전거

손해사정액 기준	기본 수수료
수도권(서울, 경기지역)	250,000원
그외지역	350,000원

### 나. 이외 일반, 특수 피해물 (벌채 기발도출 적용)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	비고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까지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까지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까지			
5천만원 이상 ~ 1억원 까지			
1억원 이상		사전협의	
※ 위장사고 적발 건은 기본수임료의 1.5배 적용 ※ 손해액 분쟁으로 소송진행시 손해절감액 기준 적용 ※ 손해사정금액은 과실상계전 금액기준			

### 다. 손해배상 분쟁 및 소송 진행 건

- Survey 의뢰 피해물의 성격에 따라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 결정

[별표 1]

**손해사정 기본 보수표**

종 목	손해사정 금액	요율(%)	기 준 액(원)
제1종 피해물 / 3종 피해물 중 자동차가 아닌 경우	1천만원 미만	기본료	660,000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까지	5.06	1,012,000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까지	4.16	1,254,00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까지	3.74	1,870,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까지	2.88	2,882,000
	1억원 이상 ~ 2억원 까지	2.20	4,400,000
	2억원 이상 ~ 3억원 까지	1.95	5,841,000
	3억원 이상 ~ 5억원 까지	1.61	8,03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까지	1.27	12,6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까지	1.11	22,22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까지	1.02	30,690,000
	30억원 이상 ~ 50억원 까지	0.91	45,650,0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까지	0.4 가산	
100억원 초과금액	0.2 가산		

▣ 제1종 피해물과 3종 중 자동차가 아닌 피해물

1. 화재 전손사고의 손해사정기본보수는 위탁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손해액확정금액의 50%를 손해사정금액으로 하여 위 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손사고라 함은 손해액 확정금액이 보험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동산에 대하여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약관(특별약관 포함)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수행시에는 손해액확정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정하여 위 표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제1종 보험종목사고로서 손해액 100만원이하의 대물배상책임(소액대물) 및 구내 치료비 등 단순현장조사일 경우에 대한 보수는 별표1의 손해사정보수표에 관계없이 기본수수료의 50%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3. 이 보수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또는 기본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기준액(또는 기본료)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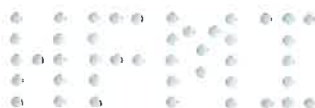
[별표 2]

**리카온특수 손해사정 보수표**

제 1종 피해물과 3종 중 자동차가 아닌 특수피해물 전건 포함(vat포함)

종 목	손해사정 금액	기준보수료	할 인
제1종 피해물 / 3종 피해물 중 자동차가 아닌 특수피해물	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손해사정 조정율의 20%, 최저수수료 30만원 수수료최고한도 52만원	별표1 기준액의 20%할인
	청구금액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까지	손해사정 조정율의 20%, 수수료최고한도 70만원	별표1 기준액의 30%할인
	청구금액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까지	손해사정 조정율의 20%, 수수료최고한도 1,00만원	별표1 기준액의 20%할인
	청구금액 3천만원 초과	금융감독원의 기본보수표적용 20%할인 적용 지급	별표1 기준액의 20%할인

\* 동계약서는 갑과 을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이나 열람을 금합니다



[별표 3]

리카온특수 손해사정 보수표

자동차(이륜차) 및 자전거 보수표(vat포함)

종 목	손해사정 금액	기준보수료
자동차 (이륜차) 및 자전거 피해물	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손해사정 조정율의 20%, 수수료최고한도 25만원
	청구금액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까지	손해사정 조정율의 20%, 수수료최고한도 35만원
	청구금액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까지	손해사정 조정율의 20%, 수수료최고한도 55만원
	청구금액 3천만원 초과	손해사정 조정율의 20%, 수수료최고한도 75만원 ✓

\* 동계약서는 갑과 을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이나 열람을 금합니다



## 특수피해물 손해사정 업무위탁 수수료 지급 기준

### □ 차량(이륜차, 자전거 포함)

손해사정금액(손해액 확정금액)	수수료(원, VAT포함)	비고
300만원 이하	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외는 교통비 및 통행료 별도 지급</li> <li>□ 일비, 숙박비 별도 지급</li> </ul>
3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000	
500만원 초과 ~ 800만원 이하	300,000	
8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400,000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500,000	
2,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600,000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700,000	
5,000만원 초과	800,000	

### □ 차량 외

손해사정금액(손해액 확정금액)	요율(%)	수수료(원, VAT포함)	비고	
1,000만원 미만	고정	300만원 이하	3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외는 교통비 및 통행료 별도 지급</li> <li>□ 일비, 숙박비 별도 지급</li> </ul>
		500만원 이하	400,000	
		1,000만원 이하	500,000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5.06	506,000 ~ 1,012,000		
2,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4.18	836,000 ~ 1,254,000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3.74	1,122,000 ~ 1,870,000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88	1,440,000 ~ 2,880,000		
1억원 초과	2.20	2,200,000 ~ 별도협의		

### □ 여비·교통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 : 실비(Economy Class)</li> <li>· 철도 : KTX(일반실)</li> <li>· 선임 : 1등 정액</li> <li>· 버스 및 기타 교통수단 : 실비</li> <li>· 업무용 승용차 : 유류대 및 통행료(실비, 영수증 첨부)</li> </ul>	국내 손해사정 법인의 지점이 소재하는 지역 (시단위 기준)은 일비만 지급
일비	· 3만원	
숙박비	· 4만원(1일 기준, 출장 편도 200Km 이상시)	

- 기타 상기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함





【별표 2】

**손해사정 보수 기준표**

본 표는 비공식 이용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공식 이용사의 경우 손해사정 레포트 작성으로 \_\_\_\_\_의 모든 업무가 종료됨으로, 결정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복하여 소송으로 전이되는 사건에 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종 목	손해사정 금액		요 율(%)	기 준 액(원)
이륜차	서울, 경기, 인천		기본료	250,000
	지방		기본료	300,000
피해물 중 자동차가 아닌 경우	1천만원미만	300만원 미만	기본료	300,000
		600만원 미만	기본료	400,000
		1,000만원 미만	기본료	550,000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까지		5.06	910,800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까지		4.18	1,254,00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까지		3.74	1,683,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까지		2.88	2,593,800
	1억원 이상 ~ 2억원 까지		2.20	3,960,000
	2억원 이상 ~ 3억원 까지		1.95	5,256,900
	3억원 이상 ~ 5억원 까지		1.61	7,227,000
	5억원 이상 ~ 10억원 까지		1.27	11,385,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까지		1.11	19,998,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까지		1.02	27,621,000
	30억원 이상 ~ 50억원 까지		0.91	41,085,0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까지		0.4 가산	
	100억원 초과금액		0.2 가산	
	배상책임약관담보 포함		1.5배	해당사건 결정 손해액 보수기준
	사고조사 면책결정 사건		별도협의	

※ 보험금결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금액으로 계산한 수수료가 직전 하위 기준금액보다 낮을 때는 직전 하위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 제1종 손해사정 보수기준 ('18년)

산정기준 2018년 04월

## I. 개요

손해사정보수 기준은 1) 손해액 기준 2)단순사고 적용 3) 업무시간 기준, 4)풍수해보험 기준 총 4가지 방식을 적용한다.

## II. 손해액 기준

「III. 단순사고 적용」, 「IV. 업무시간 기준」, 「VI. 풍수해보험 기준」 외 보험사고에 적용한다.

### □ 손해사정 보수표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원)	요율 가감산 요소			
			감산율	가산율		
3백만원 미만	기본료	515,000	-10%	+30%		
5백만원 미만		670,000				
1천만원 미만		750,000				
~2천만원 미만	5.57%	1,120,000			-20%	+20%
~3천만원 미만	4.60%	1,380,000				
~5천만원 미만	4.11%	2,060,000			+10%	
~1억원 미만	3.17%	3,168,000				
~2억원 미만	1.94%	3,872,000				
~3억원 미만	1.61%	4,818,000				
~5억원 미만	1.33%	6,655,000				
~10억원 미만	1.06%	10,640,000				
~20억원 미만	0.78%	15,680,000				
~30억원 미만	0.71%	21,420,000				
~50억원 미만	0.64%	32,200,000				
~100억원 미만	0.28%	별도규정				
100억원 초과	0.1%	별도규정				

동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금합니다.

□ 보수 산정방식

1. 이 기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별 1사고 1물건을 단위로 하며, 손해사정업무를 수임하는 선임 손해사정사마다 각각 적용한다.  
단, 공동건물의 경우 총손해사정금액은 각 피해세대별 손해액 확정금액을 합산적용하나, 각 세대별 피해수에 따라 아래 9항의 할증율을 가산한다.
2. 단체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피해수에 따라 아래 9항의 할증율을 적용하나, 피해 목적물별 거리, 평가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할증율을 가감할 수 있다.  
※ 단체사고란, 하나의 위험(Peril)에 대해 하나의 증권에서 피보험자가 다수 존재하거나, 발생장소가 다수 존재할 때 1개의 손사법인에서 일괄 업무처리 시 해당사고를 말한다.
3. 1사고에 대하여 1선임손해사정사가 2물건 이상의 손해사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물건당 기본료만을 지급할 경우에는 2물건까지는 기본료 정액을, 2물건을 초과하는 물건부터는 기본료의 50%를 적용한다.
4. "지급보험금액"이 "손해액 확정금액"의 3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손해액 확정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손해사정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약관(특별약관 포함)에 대한 손해사정업무의 경우, "손해사정금액"은 약관상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 등의 공제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고, 위임자는 손해조사 위임 시 조사대상 물건(또는 내용)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약관에 따라 부상·장해 급수별 한도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손해사정금액으로 한다.
6. 화재, 폭발, 풍수재 등 재물 전손사고의 손해사정 기본보수는 손해액 확정금액의 50%를 손해사정금액으로 하여 위 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손사고라 함은 손해액 확정금액이 보험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부보율이 50% 미만인 일부보험의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손해사정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동산의 경우 전수조사 시행한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대인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손해액확정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정한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손해사정금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을 "손해사정 금액"으로 산정하여 위 표의 요율을 적용한다.  
단,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해외근재 포함)은 상기 1.5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禁합니다.

8. 손해사정업무 수행 중 위임인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확정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별표1. 손해사정보수표」의 "최저 기본료"와 「별표2. 여비·교통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임인의 요청에 의해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할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손해사정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Ⅲ. 업무시간 기준」을 준용하되, 이에 따른 보수는 추정손해액의 50%를 기준으로 손해사정 금액별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9.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또는 피해세대수)가 5인 이상인 집단사고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할증율을 적용한다. 이 때 피해세대수 구분이 가능한 경우, 피해 세대수를 우선으로 하여 적용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① 다수 피해자(피해물)라 하더라도 피해자 중 대표 1인이 위임받아 업무 일체를 대리하는 경우
- ② 피보험자의 先배상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다수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구분	할증율
5 ~ 10인(세대) 미만	손해사정 보수의 1.2배
10 ~ 30인(세대) 미만	손해사정 보수의 1.5배
30 ~ 200인(세대) 미만	손해사정 보수의 2배
200인(세대) 이상	손해사정 보수의 3배

10. 이 보수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또는 기본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기준액(또는 기본료)을 적용한다.

11. 손해사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손해사정 보수를 산정한다.

손해사정금액	손해사정 보수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2,200,000원 + (손해사정금액-50억원) X 0.28%
100억원 이상	46,200,000원 + (손해사정금액-100억원) X 0.1%

12. 상기 보수 산정 방식에도 불구하고, 시큐리티종합보험 화재지원금의 경우 '지급보험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한다. 단, 위임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목적물에 대한 실사를

同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禁합니다.

통해 손해액을 평가한 경우에는 '손해사정금액' 방식을 적용한다.

□ 요율의 가감 적용

- 1. 요율은 표준요율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인은 난이도, 투입시간, 조사자의 전문성 및 노력도 등 위임대상의 특성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 2. 위 1항과 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기본요율 ×(1+ 1항 가산율)의 방식으로 최종 요율을 적용한다.

□ 현장활동 보수 (손해사정금액 10억 초과건)

- 1. 기준 : 현장활동 5회 초과 + 총동원인원 10인 초과
- 2. 대상 : 현장활동 1회당 업무시간 6시간 이상 (이동시간 포함)
- 3. 경력별 보수

경 령	인당 보수
5년 미만	10만원
10년 미만	20만원
10년 이상	30만원

- ※ 적용예 : 조사자 2인(10년 미만)이 현장조사 10회 실시
  - ① 현장활동 10회(>5회)이고 총인원 20인(>10인)으로서 보수 적용기준 충족
  - ② 적용보수 = 10인 (20인-10인)×20만원(10년 미만) = 200만원
- ※ 상기 보수 적용인원(10인)에 대하여 일비 중복적용 불가
- ※ 위 '보수 산정방식' 제9항의 집단사고 할증을 적용 시 중복적용 불가

III. 단순사고 적용

□ 적용대상 및 보수기준

대 상 건	보 수
가계성 도난보험	35만원
구내치료비	
비용성 담보 (법률비용담보, 6대가전담보, 골프용품손해, 휴대폰손해, 홀인원보험)	
현장 조사 시행건으로 청구포기 등으로 실질적인 사고조사 및 손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임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한합니다.

차량 파손 사고
손해액 3백만원 이하 대물 사고
가입한도내 실손담보로 손해액 5백만원 이하건

□ 산정기준

1. 위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건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I.손해액 기준방식」에 따른 보수를 적용할 수 있다.  
· 예: 목적물이 아파트로서 아파트보험 등 중복보험 적용으로 가액 평가 실시 필요
2. 난이도, 투입시간, 조사자의 전문성 및 노력도 등 위임대상의 특성에 따라 추가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임 시 또는 위임처리 업무 종결 전에 위임인과 수임인이 협의하여 기본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위임인이 결정한다.
3. 현장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선 확인을 통한 사고조사, 면책, 청구 포기의사 등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노력도, 성과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보수의 50%를 지급 한다.

IV. 업무시간 기준

□ 적용대상

1. 손해평가 대상이 유체물·對人이 아닌 권리, 금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
  - ① 대상 : BBB, DDD, BI(장기보험 제외), D&O, 상금보험, 잔존물회수보험, 권원보험, Mortgages 관련 보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변호사, 법무사 등 / 의료배상 제외), 설계감리보험, 건설공사 소음사고 배상책임, 전자금융 배상책임보험, 해외PL 등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보험종목
  - ② 배상책임보험, 도난보험의 금전·담보물 등 도난사고는 「I.손해액 기준방식」의 기본 보수기준을 따른다.  
단, 배상책임보험 中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지자체업무배상책임보험은 당사자간 사전 협의에 따라 同 「업무시간 기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소송상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등 소송 발생건에 대한 대응업무에도 준용할 수 있다.  
단, 손해액 평가를 위한 감정 대응은 손해액 평가 방식으로 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
3. 해외 조사건의 "수임인" 중계 보수(Coordination fee)는 시간당 보수 2배를 한도로 적용할 수 있다.

同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禁합니다.

[별표.1]

## 재물(1종)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 1. 손해사정 보수표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원)
3백만원 미만 및 면책건	기본료	500,000
3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580,000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660,000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5.06	660,000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4.18	1,012,00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74	1,254,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88	1,87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20	2,88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95	4,40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61	5,85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27	8,0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0.89	12,70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0.82	17,800,000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73	24,600,0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6,500,000 + 50억원 초과금액 × 0.4% 가산	
100억원 초과	56,500,000 + 100억원 초과금액 × 0.2% 가산	

## 2. 수수료 기준

- 가. 화재, 폭발, 풍수재, 농기계(자차) 등 재물 전손사고의 기본 보수는 상호합의에 의해 손해액 확정금액의 50%를 손해사정금액으로 하여 위 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손 사고라함은 손해액 확정금액이 보험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동산에 대하여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 대인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손해액확정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손해사정금액”으로 정하여 상기 수수료 기준표의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손해사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요율 5백만원이상~10백만원미만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 다. 이 수수료 기준표를 적용함에 있어 손해사정금액 10백만원 이상 건 중 산출된 수수료가 구간별 기준액(기본료) 보다 적을 경우 구간별 기준액을 적용한다.
- 라. 가축재해보험은 손해액의 70% 상당액을 손해사정 금액으로 적용한다.  
단, 축산휴지특약은 30% 적용
- 마. 농기계종합보험 자기차량의 사고는 손해액의 70% 상당액을 손해사정 금액으로 적용한다.
- 바. 지급보험금액이 손해액 확정금액의 30% 미만인 경우 손해사정금액은 손해액 확정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 사. 이 수수료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별도 지침에 의해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아. 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약관(특별약관 포함)에 대한 손해사정업무의 경우 “손해사정금액”은 약관상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 등의 공제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고, “위탁자”는 손해조사 위임 시 조사대상 물건(또는 내용)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 3. 집단사고 수수료 기준

- 피해자 또는 피해세대수가 10인 이상인 집단사고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할증율을 적용한다.

구분	할증율	비고
10 ~ 30인 미만	손해사정 수수료의 1.2배	-
30 ~ 200인 미만	손해사정 수수료의 1.5배	-
200인 이상	손해사정 수수료의 2배	-

\*주) 아파트 낙뢰사고 제외



#### 4. 단순사고 수수료 기준

○ 적용대상 및 수수료 기준

대 상 건	기 준 액
• 가계성 도난사고	50만원
• 홀인원보험, 골프용품손해사고	50만원
• 가축재해보험 "말"보험	66만원
• 가축재해보험 "소"보험	10만원
• 농기계종합보험 항공방제기	66만원
• 농기계보험 자기신체사고 전 건	50만원
• 농기계보험 간편 조사 건	5.4만원
• 가축재해보험 “소” 보험 간편 조사 건	3.5만원

\* 주) 풍수해보험은 별도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 5. 신중보험 수수료 기준

가. 대상 : 재물, 금융보험(BBB, 전자금융배상책임), 신원보증보험 등 “수탁자”가 신중보험 수수료 적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나. 수수료 산정 (Time base)

- 조사자 경력별 적용

조사자 경력	시간당 수수료
5년 미만	50,000원
10년 미만	70,000원
10년 이상	90,000원

- 수수료 산정 내역서를 제출한다.
- 수수료 산정의 시간은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등 실제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 건의 난이도, 노력도, 성과에 따라 해당 “시간당 수수료기준”의 차상위 또는 차하위를 적용할 수 있다.
- 조사경력은 해당 보증의 업무처리 경력기준으로 한다.
- 일당은 별도 지급한다.
- 보수 5백만원 초과시 보험자와 별도 협의 후 산정한다.

【별표. 6】

여비 · 교통비 지급기준(공통)

1.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일비	평일	30,000원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60,000원
교통비	항공임	실비(2등석Economy)
	철도임	실비(KTX특실 제외)
	선(여객선)임	실비(1등정액)
	고속·시외버스	실비
	택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2회)
	업무용 승용차	유류비 및 통행료 실비
숙박비	1인	40,000원
	2인	60,000원

2. 적용기준

가. 대한민국내 손해사정법인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시단위 기준)의 여비교통비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단,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타지역 소재 조사자가 시외 출장한 경우에는 상기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나. 교통비 및 숙박비는 통행료 영수증 등 기타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다. 업무용 승용차 이용 시 유류비 기준

구분	산식	비고
일반장기·정책	주행거리 × IL당 요금 ÷ 평균연비	
농작물	(주행거리 × IL당 요금 ÷ 평균연비) × 1.1	농작물특성반영

- 거리기준 : 출발지와 출장지간의 실제 이동거리
  - 한국도로공사, 다음, 네이버 길찾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첨부
- IL당 요금 : www.opinet.co.kr (출장 시작일 기준 주간 평균 유가)
- 평균연비

휘발유	경유	LPG
10.06	10.16	7.87

라. 숙박비는 1인기준 4만원, 2인기준 6만원을 적용한다.

\* 숙박비 지급 예시: 1박기준

인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4만원	6만원	10만원	12만원	16만원	18만원